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「하수도법」에서 위임되지 않은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여 하수도 사용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하수도법」에 위임(근거)없는 조항 삭제
 -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(안 제3조)
 -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(안 제6조)
 - 과태료 (안 제36조)
- 상위 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
 - 「하수도법」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: 관거 → 관로 등
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「물환경보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상위법령인 「하수도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,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,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